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

2022. 10.

재판제도분과위원회

## I.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요약

### 1. 문서감정인 선정·관리 및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 ■ 논의 경과

- 문서감정인 선정·관리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함
- 문서감정인 선정·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함
  -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숙련도 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문서감정인에 대한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문서감정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연수를 시행하는 방안
- 위원들 다수가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11명 중 8명 찬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문서감정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연수를 시행하는 방안(11명 중 6명 찬성)에 대하여 찬성함

#### ■ 결론

- 위원회는 법관, 변호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소속된 문서감정분야의 전문가, 법학교수 등을 위원으로 하는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문서감정인에 대한 정기적



인 교육·연수를 시행할 것을 제안함

## 2. 감정인 범죄경력조회 방안에 관한 논의

### ■ 논의 경과

- 감정인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함
- 감정인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논의함
  -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민사소송법에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제1안)
  -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대법원규칙에의 위임규정을 두고 대법원규칙으로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제2안)
  - 민사소송법 개정 없이 대법원규칙으로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제3안)
- 위원들의 찬성의견이 제2안(11명 중 5명 찬성)과 제3안(11명 중 6명 찬성)으로 나뉘었음

### ■ 결론

- 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대법원규칙에의 위임규정을 두고 대법원규칙으로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과 민사소송법 개정 없이 대법원규칙으로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중 적절한 방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 3. 의료감정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 ■ 논의 경과



- 의료감정의 지연, 반송 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부실한 감정으로 인해 재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 의료감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함
- 의료감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함
  - 의료 상임전문심리위원이 감정절차의 스케줄러로서 관여하는 방안
  - 컨퍼런스 감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 감정촉탁기관의 확대 방안
  -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료를 증액하는 방안
  - 기타 감정촉탁 현황 등을 집계하는 방안, 감정인들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및 각 법원에서 관내 병원들의 감정인들과 정기적인 간담회·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 감정촉탁 시 감정회신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회신을 요청하는 방안 등

#### ■ 결론

- 위원들은 의료 상임전문심리위원이 감정절차의 스케줄러로서 관여하는 방안,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료를 증액하는 방안, 감정촉탁 시 감정회신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회신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
- 다만,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신체감정 등 개선방안 연구'에 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추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실시 여부 및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위원들 대다수가 공감함

## 4. 현장검증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

#### ■ 논의 경과

- 현장검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현장검



증을 다녀올 경우 주간 근무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라는 데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함(11명 전원 선택). 최근 인터넷 등 발달로 직접 현장에 갈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다수였음(11명 중 8명 선택). 다만, 검증여비 액수가 현장검증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에 비하여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견해가 나뉘었음(11명 중 4명 선택)

- 현장검증 활성화 방안으로 현장검증여비 증액 및 원격 영상검증 도입을 검토함
- 현장검증여비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들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나뉘었음(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타 의견 1명)
- 원격 영상검증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들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나뉘었음(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

#### ■ 결론

- 현장검증 건수가 감소하는 원인을 추가 분석하고, 그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현장검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위원들 다수가 공감함

## 5. 기타 감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 ■ 논의 경과

- 기타 감정 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함
  - 영상재판에 의한 감정인신문을 활성화하는 방안
  - 지연감정 시 감정료 감액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
  - 재판장 등이 감정인 평정표를 작성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감정인 평정을 활성화하는 방안
  - 감정인 평정표의 평정요소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적합/부적합 여부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감정인 평정표를 개선하는 방안
- 감정인 평정을 활성화하고 감정인 평정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대다수가 공감함



## ■ 결론

- 위원회는 감정인 평정을 활성화하는 방안 및 감정인 평정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II. 논의의 배경

### 1. 논의의 필요성

-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감정·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감정·검증 결과가 사실관계 판단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감정·검증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중요한 증거방법임
- 문서감정인의 경우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이 없어 감정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의료사건 등에서 감정이 매우 지연되어 절차가 공전되는 경우가 많음
- 현장검증의 건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바, 그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검증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왔음

### 2. 연구 및 검토 주제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감정 제도 개선 방안: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한 감정인 선정 방안, 1인 감정인 선정의 문제점 극복 방안, 감정절차에서의 당사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부실감정 및 감정지연 방지 방안, 감정인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등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제도 개선 방안: 검증 여비 현실화, 원격 영상 검증 등 검증 방식의 다양화 방안 등



### Ⅲ. 문서감정인 선정·관리 및 개선방안

#### 1. 검토 배경

- 우리나라에서는 문서감정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으로, 법원이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지식·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문서감정인 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도(2019. 2. 19. 노컷뉴스)
- 법원행정처는 2020년 ‘문서감정인 자격 개선 방안’을 사법정책연구원에 연구주체로 신청함
- 2022. 3.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문서감정인 자격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김주석,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2)]를 발표함

#### 2. 우리나라의 문서감정인 선정·관리

##### 가. 관련 규정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이하 ‘감정예규’라 함)에서 문서감정인과 함께 다른 분야의 감정인까지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음

##### 나. 감정인 선정의 원칙

###### [감정예규]

###### 제4조(감정인 등 선정의 원칙)

- ① 감정인등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및 『감정축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다음부터 두 명단을 합쳐서 부를 때는 ‘『감정인 명단 등』’이라고 한다) 중에서 일정한 수를 무작위적으로 추출, 선정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명단 등』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 문서감정인은 다른 감정인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특정 감정인에 의한 감정에 합의하거나 특수한 감정기술이 필요한 사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소법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 이러한 전산프로그램은 매년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함
- 감정인 선정에 있어 소송관계인, 법원, 감정인 사이에 유착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감정의 절차적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 감정인 명단 등재

### [감정예규]

#### 제4조의2 (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10.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한다.
- ③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감정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감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5조 (감정인 명단)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1. 시가등의 감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2. 측량감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
3. 문서등의 감정

가.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나.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 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

다. 위 가목 및 나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사비등의 감정: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속단체가 추천한 사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사람

② 『감정인 명단』의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

가.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소관:사법지원실)이 주관하는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감정인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다.

나. 가.목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다. 법원행정처장은 범죄경력조회 등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의 명단을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한다.

라.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는 다.목에 따라 송부 받은 명단의 감정인 후보자 중에서 평정기준표(전산양식 A1800)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한 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등재 요청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재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등재 요청한 감정인 후보자를 승인하여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중략-

⑧ 문서등의 감정의 감정인으로 지정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입체 현미경
2. 확대 투영기
3. 자외선 감식기



4. 적외선 현미경(또는 적외선 필터)
5.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또는 확대컴퓨터)
6. 이화학적 실험기구

#### ■ 명단 등재 자격

- 문서감정은 다른 감정분야와 달리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등록공인된 민간자격)이 없음
- 이에 따라 문서감정의 경우 다른 감정과 달리 감정인의 자격에 대해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감정예규는 그 자격요건을 국가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감정예규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 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나목), 위 가목 및 나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다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국가기관 발급 경력증명서에 의해 그 신뢰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목의 경우와 달리 나목, 다목의 경우 그 자격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설감정인 등 자격경력증명서(연수증명서)의 신뢰성이 문제됨

#### ■ 명단 등재 절차

- 매년 8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 다음해 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 모집 공고
- 9월 중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에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
  - 신청 시 공통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 3) 자격증 및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업무관련등록신고현황 자료(사무소신고필증이나 등록증 등)
    -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1개의 파일로 첨부)



- 7) 법원감정, 조사업무 종사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건기록 표지 또는 세금계산서, 감정인지정결정문, 감정서 표지 등)
- 8) 경력증명서
- 9) 기타: 감정업무와 관련된 업무 또는 교육을 필한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서등 감정인 추가제출 서류
  - 감정예규 제5조 제8항의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보유시설·장비의 사진 등과 함께 모델명, 제품번호, 구입연도, 구입 당시 가격, 내구연한 등을 기재하여 첨부)
- 문서감정인 자격증명 관련 제출서류
  - 감정예규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 관련 국가기관<sup>1)</sup> 근무 경력증명서(감정예규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검찰청의 경력증명서 등
  - 감정예규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목 관련 사실감정인 작성 경력증명서(연수증명서)
- 법원행정처장은 범죄경력조회 등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의 명단을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
- 범죄경력조회
  - 감정인 후보자 등재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는 송부받은 명단의 감정인 후보자 중에서 평정기준표<sup>2)</sup>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한 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등재요청<sup>3)</sup>

---

1) 문서감정의 국가기관으로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국세청 문서감정팀 등이 있음

2) 현재의 평정기준표는 문서등의 감정인에 관하여 ‘감정, 연구, 연수’ 항목에서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감정·연구(위와 동등한 감정·연구 포함) 5점,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수한 자로부터 연수(위와 동등한 연수 포함) 3점 부여하여 차등 배점하고 있음

3) 각 법원 및 지원에서는 『감정인 명단에 등재 요청할 자의 선정 등에 관한 내규』 등에 따라 감정인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정기준표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감정인 후보자 명단 중 등재 요청 대상 감정인 후보



-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등재 요청한 감정인 후보자를 승인하고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다음 해 감정인 명단에 등재함
- 2022년 현재 법원의 문서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은 총 25명이고, 25명 중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 근무 경력이 있는 감정인은 6명임

## 라. 문서감정에 관한 특칙

### [감정예규]

#### 제20조 (감정방법)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민사사건 등에 있어서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명한다.

#### 제21조 (감정인에 대한 지도·감독)

- ①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정된 감정인들에게 국가기관연구소로부터 적절한 교육·연수를 받을 것을 명하거나, 문서감정업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 등을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 ▣ 형사사건 감정인 선정의 특칙

- 형사사건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성, 중립성을 다른 국가기관연구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원칙적인 감정기관으로 함
-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꺼릴 경우를 상정하여 민사사건 등에 있어서와 같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민간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 교육·연수 의무

- 감정예규는 문서감정인에게 특별히 국가기관연구소로부터 교육·연수를 받고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감정인을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장·지원장에게 부여함

자 및 부적격 의견 대상 감정인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음



- 문서감정인의 경우 전문분야에 관한 국가자격 내지 공인자격이 없음을 고려하여 교육·연수 등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임

### 3. 외국의 문서감정인 선정·관리

#### 가. 영국

##### ▣ 전문가 증언 제도

-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문가 증인은 기술이나 경험 등에 의한 의견을 증언으로 진술하는 증인으로, 증거법상 영미법계의 전문가 증언은 대륙법계의 감정에 대응됨
- 영국의 당사자 대심구조 하에서 기본적으로 소송당사자들이 전문가 증거의 탐색, 확보, 신청 및 선정 관리를 모두 주도함. 이에 따라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가 세운 전문가 증인이 신뢰할 만한지 심리하여 그 허부를 결정함
-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s Rules) Part 35에서 전문가 증거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보충하기 위한 실무지침(Practice Direction) 35에서 전문가는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는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법원을 도와야 하고, 당사자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또한 위 실무지침에서는 전문가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전문가 자격의 상세나 실제 감정을 수행한 사람의 자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 문서감정 전문가 인증 단체

- 국가가 관리하는 감정인 내지 전문가 증인 명단은 존재하지 않음. 1999년 문서감정 분야를 포함한 법과학 전문분야에 대한 공적 규율기관인 포렌식전문가등록위원회(Council for the Registration of Forensic Practitio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2009년 내무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동 위원회는 폐



지됨

- 현재 비영리단체인 공인법과학협회(Chartered Society of Forensic Science)가 대학교육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법과학 학위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년 이상 실무경력의 정회원 중 신청자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면접을 거쳐 '공인 포렌식 실무가'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인증기간은 3년이고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쳐 갱신됨

## 나. 미국

### ■ 전문가 증언 제도

- 연방증거규칙 제702조에서 전문지식이 쟁점 이해에 도움이 되고, 충분한 자료에 기초하며, 신뢰할 만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면 지식, 기술, 경험, 훈련이나 교육에 의해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는 증인은 의견 등 형태로 증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문서감정인 전문가 인증 단체

- 인증단체로서 미국문서감정인위원회와 문서감정인위원회가 있음
- 미국문서감정인위원회
  - 문서감정인들을 위한 자격 기준의 정립, 유지 및 향상과 지원자에 대한 전문가 자격 인증을 목적으로 함
  - 문서감정인 인증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는 ① 교육훈련 기록, 대학교 성적증명서와 함께 지원서 등 제출, ② 필기시험 단계, ③ 실기시험 단계, ④ 구술 시험 단계의 4단계의 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음
  - 문서감정인 인증을 받은 사람은 이사회가 정한 기간 동안 유효한 자격을 보유하게 되고, 기간이 끝나면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함. 현재 인증기간은 5년임
- 문서감정인위원회
  - 시험을 통과한 지원자에게 문서감정인 자격을 부여하는 인증기관임



- 인증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2단계로 구성
- 인증기간은 5년이고, 자격보유자는 매 5년마다 갱신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격을 갱신해야 함

## 다. 프랑스

### ▣ 법원감정인 제도 안에서의 문서감정인

- 문서감정인은 법원감정인 제도의 큰 틀 안에서 그 자격이 관리됨. 법률에 의하여 항소법원 단위 감정인 명단과 파기원 전국단위 감정인 명단이 관리되고 있음. 법원은 각 항소법원이나 파기원의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인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 외의 감정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유가 명시되어야 함

### ▣ 법원감정인 명단등록 절차 및 관리

- 명단 등록이나 재등록을 위한 자격심사에는 검사장, 항소법원 법관총회, 법관 및 검사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거쳐 지명된 감정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함
- 법원감정인으로 처음 등록되면 3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고, 항소법원 명단에 등록된 다음 전국 단위의 파기원 명단에 등록될 수 있음

## 라. 독일

### ▣ 문서감정인 선정 절차

- 문서감정인을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일반적인 감정인 선정 절차에 따라 문서감정인을 선정함. 통상적으로 법원은 각 직능단체로부터 받은 공적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인을 선정하고 있음

### ▣ 감정인 공적 임명

- 독일 상공회의소, 연방건축사협회 등 주요 단체들이 공적 감정인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감정인 기구를 설립하고, 위 기구에서 감정인의 공적인 선임과 그 활동에 대한 공동의 기본 원칙을 마련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에 대하여 특정한 감정 활동에 적합한 사람임을 인증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 문서감정인 역시 공적 임명 제도를 통하여 자격 있는 감정인으로 활동할 수 있음

- 공적 임명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학위, 해당 분야의 실무 활동 및 전문지식의 소명 자료 등이 요구됨. 독일 상공회의소 등은 독일 연방 전체에 대한 감정인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할 때 특정 종류의 감정에 대하여 감정인이 공적으로 임명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밖의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마. 일본

### ■ 건축·의료 사건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설치

- 전문감정 분야에 대하여 감정인 후보를 신속하게 선정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1. 7. 그 산하에 의사관계소송위원회와 건축관계소송위원회를 설치함
- 각 위원회는 감정인 선정을 위해 관련 학회들로부터 미리 감정인 후보자 추천을 받아두었다가 해당 유형의 사건에서 재판부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절한 감정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함

### ■ 문서감정인 선정 절차

- 관계소송위원회가 구성된 의료나 건축사건을 제외한 사건에서 감정인 선임은 사실상 당사자로부터 감정인 추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재판부가 감정인을 선정할 경우,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각 재판소의 사례를 모아 발간한 '민사사건감정등사례집'을 참고함. 사건 유형에 따른 감정인의 성명, 연락처, 직업 등 프로필과 감정사항, 감정기간, 감정료 등이 정리되어 있어 유사한 사건의 감정인을 검색할 수 있음

### ■ 문서감정인 자격과 관련 단체



- 일본에서 문서감정 분야의 공적 자격은 존재하지 않음
- 수사기관 근무 경력자, 민간 연구자, 필적학자 등이 문서감정 업무를 행하고 있고, 민간 단체들이 존재하나 문서감정 분야에 관한 엄격한 자격관리를 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4. 문서감정인 선정·관리의 개선방안

### 가.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 위원회 설치

#### ■ 필요성

- 문서감정인의 경우 다른 감정분야와 달리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감정인 명단 등재 절차에서 감정인 후보자의 자질·능력에 관해 실질적 심사를 할 필요성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큼

#### ■ 위원 구성

- 법관, 변호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등에 소속된 문서감정분야의 전문가, 문서감정 분야에 관심 있는 법학교수 등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 역할

-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 위원회가 감정인 명단 등재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행하여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하면, 결격사유 발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행정처장이 이들을 감정인 명단에 잠정적으로 등재
- 서류심사, 면접 등 감정인 명단 등재 후보자의 자질·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감정인 평정서 검토, 교육·연수 등 방안 마련, 감정인 명단 조정 여부 심의 등도 담당할 수 있음
- 문서감정 관련 소송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 문제도 논의 가능. 예를 들어 문서감정신청에 관한 맞춤형 표준양식을 만들어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



이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미리 적절하게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감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감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줄일 수 있음

#### ■ 근거 규정 신설 필요

- 감정예규에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 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숙련도 평가 활용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부교육 프로그램

구 분	신규 직원	기존 직원
교육기간	30주	평가 후 교육과정 이수로 운영
평 가	구술, 필기, 실기	외부 숙련도 평가: 연 2회 내부 숙련도 평가: 연 2회
평가결과		1회 이상 미통과 시 감정인자격인증 유예 교육과정 재이수

#### ■ 숙련도 평가 제도의 내용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숙련도 평가 제도를 보유하고 있고, 평가 후 적중률이 90% 이상일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 연구원 직원들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하여 점수가 낮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 ■ 숙련도 평가 제도의 활용 방안

-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 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숙련도 평가를 거친 후 점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 숙련도 평가를 거친 사람에 대해 감정인 명단 등재 신청 시 평정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가점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
-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정기준표 개선



## 다. 문서감정인 자격시험의 실시

### ▣ 시험실시 기관

- 여러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인들에 대한 숙련도 시험 등을 실시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동 연구원에 시험 실시를 위탁하는 방안
-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 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행정처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방안. 시험에 장비가 필요하다면 행정처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자격시험의 형태

- 필기시험, 실기시험, 구술시험을 단계적으로 실시

### ▣ 근거 규정 신설 필요 여부

- 감정예규 제5조 제2항 다.목에서 “법원행정처장은 범죄경력조회 등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의 명단을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격심사에 자격시험이 포함된다고 본다면 별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지 않아도 시행 가능하다고 보임
-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평정기준표 개선

## 라. 문서감정인 교육연수

### ▣ 교육·연수 명령의 주체

- 감정예규 제21조에서 법원장 및 지원장의 문서감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교육·연수 명령은 행하여지지 않고 있음
- 전국 법원이 동일한 감정인 명단을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연수 명령의 주체를 법원장 및 지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 ▣ 교육·연수 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문서감정인이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관



계 구축 필요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과거 국정원, 국방수사연구소, 국세청의 문서감정 담당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음(교육기간 6주에서 12주).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임

#### ■ 감정예규 개정 필요

- 감정예규 제21조 제1항의 교육·연수 명령의 주체를 법원장 및 지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원행정처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문서감정인의 교육·연수 후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정기준표 개선

## 5.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 ■ 문서감정인 선정·관리에 관한 개선의 필요성

- 문서감정인 선정·관리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음(11명 전원 찬성)

#### ■ 개선방안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복수선택 가능)

- ① 법관, 변호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소속된 문서감정분야의 전문가, 법학교수 등을 위원으로 하는 문서감정인 후보자 선정·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서감정인 명단 등재 후보자들의 자격심사를 진행하는 방안: 11명 중 8명 찬성
-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숙련도 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 시 숙련도 평가를 거친 후 점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가점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 11명 중 2명 찬성
-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문서감정인에 대한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11명 중 3명 찬성
-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문서감정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연수를 시행하는 방안: 11명 중 6명 찬성



- 기타 의견: 11명 중 1명(②, ③, ④)가 고려 가능한 방안으로 보이나 실현가능성, 예상 효과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선택 어려움.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 ▣ 그 밖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문서감정인들과 법관들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문서감정에 대한 의견을 교류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
- 문서감정료가 높아 감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의견

## IV. 감정인 범죄경력조회 방안

### 1. 검토 배경

- 감정예규 제4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일정 조건하에 감정인 명단에 등재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감정예규 제5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범죄경력조회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법무부와 경찰청은 범죄경력조회 회보 근거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의 ‘재판’을 형사재판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제10호의 ‘다른 법률’을 법률과 대통령령(준하는 규칙)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 → 법원감정인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거부함
- 또한,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9호 등을 근거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4)을 이용하여 법원 자체적으로 결격사유조회

#### 4) 전자정부법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를 하려고 위 법규를 시스템에 등재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참고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특정인의 결격 관련 정보는 '결격사유'와 '범죄경력'으로 구분됨
  - '결격사유' 유무 조회는 징역, 집행유예, 자격정지 등의 법원 선고 자료와 파산,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조회가 가능함
  - '범죄경력' 유무 조회는 벌금형 이상 경찰청이 보유하는 제반 자료의 조회가 가능함
- 감정인 후보자 본인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등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기도 함
- 이로 인하여 감정예규 제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명단 등재의 결격사유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범위에서 대상정보의 종류, 범위 및 유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 ① 법 제38조 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개인의 신원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 가. 주민등록표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 나. 병적증명서 등 개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정정보와 유사한 행정정보로서 중앙행정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정보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9. 법령에서 정한 전문심리위원, 조정위원, 관리위원, 감정인,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지정 또는 위촉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각급 법원 청사 출입, 그 밖에 필요한 경우의 범죄경력조회 또는 신원조사의뢰

## 2. 법원 감정인의 지위

- 감정인은 전문분야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법관의 보조자 또는 조력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임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감정예규 반영 전에는 결격사유에 대한 통일적 규정이 없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였으나,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 개통에 의해 감정인 등재 신청 창구가 법원행정처로 단일화 됨에 따라 전국법원 감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일된 결격사유를 감정예규에 규정하였음 (2012. 10. 9. 예규 개정, 제4조의2 신설)

## 3. 범죄경력 등 조회가 가능한 예

### 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조회

- 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제3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2, 형사소송법 제279조의4 제3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7에 따라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에서 결격사유 규정(다만,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결격사유 규정만 존재함)
- 즉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에서 결격사유 규정,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있음



### [민사소송법]

####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③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민사소송규칙]

####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별도의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③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형사소송규칙]

#### 제126조의7(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전문심리위원규칙]

####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나. 조정위원회에 대한 결격사유조회

-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조정법에서는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명시적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정위원규칙 제3조에서 결격사유 규정
- 법원행정처는 상임 조정위원 위촉 시 조정위원규칙 제3조를 근거로 '행정정보공통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있음
- 각급 법원은 조정위원 위촉 시 조정위원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조정위원규칙 제3조,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9호 등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회신을 받고 있음

### [조정위원규칙]

#### 제2조(위촉)

- ①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소속 조정위원을 위촉한다.
- ② 지방법원은 지방법원본원소속 민사조정위원 및 지방법원본원 관할구역내의 사군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지방법원지원장은 지방법원지원소속 민사조정위원 및 지방법원지원 관할구역내의 사군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각각 위촉한다.

#### 제2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 ① 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결격사유)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 조정위원,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무사로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입양사건에서의 범죄경력조회

- 입양허가 절차에서 경찰청이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가정법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거부하여 가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2014. 7. 1.)

- 각급 법원은 입양허가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등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회신을 받고 있음

#### [가사소송법]

#####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 4. 감정인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방안

### 가. 감정인 후보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 본인확인용을 제출받는 방안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규정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위법의 가능성이 있음
-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기도 함

### 나. 법원내부 코트넷 사건검색 기능을 통한 범죄경력조회 방안

- 코트넷 업무관련프로그램의 사건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로 형사 사건을 조회하여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방법
- 업무관련프로그램에 등재된 정보는 개별 형사사건 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이를 민사사건 등의 감정인 선정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볼 수 있어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함



- 모든 감정인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코트넷 사건검색을 통해 형사사건을 조회할 경우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이 있음

## 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 1) 논의 가능한 방안

#### ▣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민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 입양허가 절차에서 가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한 사례를 참고
-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민사소송법에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

#### ▣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대법원규칙에의 위임규정을 두고, 대법원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 전문심리위원의 경우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전문심리위원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결격사유조회가 가능한 것을 참고
-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대법원규칙에의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대법원규칙으로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

#### ▣ 민사소송법 개정 없이 대법원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 조정위원의 경우 조정위원규칙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결격사유조회가 가능한 것을 참고
- 민사소송법 개정 없이 대법원규칙에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

### 2) 문제점

- 공통적으로, 내부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감정예규에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



과 달리, 민사소송법이나 대법원규칙에 결격사유를 신설할 경우 감정인 지정 전이나 감정서 제출 시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고, 미준수 시 감정인 지정행위 및 감정서 무효 여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야기될 수 있음

- 민사소송법 개정 없이 대법원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2항<sup>5)</sup>에서 감정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현재 감정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정인의 결격사유를 대법원규칙으로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또한, 감정예규에 기재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법원규칙으로 일률적으로 감정인이 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감정인 지정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5.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 ▣ 감정인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 감정인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음(11명 전원 찬성)
- 대법원규칙 등으로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할 경우 미준수 시 감정인 지정행위 및 감정서 무효여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야기될 수 있으나, 결격사유조회를 통하여 부적절한 감정인을 감정인 명단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데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함

### ▣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민사소송법에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 찬성위원 없음

5) 민사소송법 제334조(감정의무)

①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②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대법원규칙에의 위임규정을 두고 대법원규칙으로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 11명 중 5명 찬성
- 민사소송법 개정 없이 대법원규칙으로 감정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 11명 중 6명 찬성(감정예규 결격사유 조항인 제4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감정예규 조항을 그대로 대법원규칙으로 둘 경우 이는 모든 감정인의 일반적인 결격사유가 아닌 감정인 명단 등재를 위한 규정이므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정인 결격사유를 대법원규칙으로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음)

## V. 의료감정 개선방안

### 1. 검토 배경

- 의료사고, 신체장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등에서 의사를 통한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등 절차는 필수적인 요소임
- 의사의 감정행위는 진료업무에 부수하는 부수적인 업무로, 본연의 진료업무 등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음
- 의료감정의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감정촉탁서의 반송 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부실한 감정으로 인해 재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감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선 병원과 분리 독립된 감정기관 신설이 필요하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2. 감정 개선 추진 경과

#### 가. 2017년

- ▣ 신체감정촉탁 병원 확대(감정예규 제6조 제3항 개정)



- 신체감정 등 촉탁 병원을 국·공립병원과 대학부속병원에서 일반 종합병원으로 확대

#### ■ 감정료 인상(감정예규 제39조 개정)

- 신체감정료 과목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진료기록감정료 과목당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 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과목당 합산
- 재판장 재량 증액 가능(감정서 제출의 신속성, 감정의 문항 수, 감정의 난이도, 감정인 등의 기일 출석 여부, 감정인 등에 대한 감정보완 또는 사실조회 실시 여부 등을 참작)

#### ■ 상임전문심리위원(의료, 건설) 도입

### 나. 2019년

#### ■ 2019. 12. 의료감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전국에 있는 의료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청취, 상임전문심리위원이 감정절차에 스케줄러로서 관여하는 방안 논의

### 다. 2020년

#### ■ 통합감정지원시스템 오픈

- 감정진행사건 탭: 감정이 진행 중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감정 사건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함
  - 종국 이전 사건의 감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목록 조회
  - 색상에 따른 사건분류
    - 빨강색: 감정인지정결정 후 1년이 지나도록 감정서 제출이 안 된 사건
    - 주황색: 감정인지정결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감정서 제출이 안 된 사건



- 감정인평정대상사건 탭: 감정인 평정 절차에 대한 접근성 향상. 평정 결과 확인을 통한 적절한 감정인 선정에 활용 가능
  - 현재부터 2년 내 기간 범위에서 감정인 지정된 사건을 감정인평정대상사건 목록으로 조회
  - 감정인명 클릭하면 ‘감정인 평정표 관리’<sup>6)</sup> 화면으로 연동되며, 감정인의 종전 평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감정인 평정을 활성화할 경우 감정인 명단 등재를 위해 재선정을 원하는 기존 감정인들에 대한 실질적 자격심사를 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 감정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경우 특수한 감정 방법이나 장비가 필요한 사건에서 그에 적합한 감정인을 찾아내 효율적인 감정 및 재판 진행 가능
  - 감정인 평정을 하지 않은 경우 ‘평정대기’, 감정인 평정을 실시한 경우 ‘평정완료’로 진행상태 표시
- 전문심리위원참여사건 탭: 감정 절차와 상임 전문심리위원제도와 연계 강화
  -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참여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목록 조회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이후 재판장(또는 주심판사)이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설명요구서가 표출됨. 설명요구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 설명의견서가 표출됨
- 더보기 탭
  - 건설·의료사건 상임전문심리위원 명단(연락처)과 제도 설명 화면, 전문심리위원 활용 절차 안내 및 각종 결정문 생성, 관련 매뉴얼 등

## 라. 2022년

### ■ 통합감정 메뉴 개선

6) 현재 감정인 평정 결과는 ‘감정인 평정표 관리’ 화면에서 법관, 사법보좌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및 전산선정업무수행자가 확인 가능, 타 법원 감정인 평정표도 공유 가능



- 통합감정 메뉴 화면설정 변경
  -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통합감정 메뉴를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의 기본 화면에 편입시킴
  - 통합감정 메뉴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상단의 화면설정에서 언제든지 삭제 가능
- 통합감정 메뉴 개선
  - 평정완료가 되었다면 대상사건을 감정인평정대상사건 탭에서 삭제
  - ‘사건종국’ 또는 ‘감정인지정취소(말소)’ 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평정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 ‘파란색’ 평정대기 문구가 ‘빨간색’ 평정대기 문구로 변경
  - 감정진행사건 탭에서 감정서 제출 지연으로 주황색이나 빨강색으로 표시된 사건을 평정완료시 초록색이나 파랑색으로 색상 변환되도록 개선
- 감정인 평정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 민사사건 전자소송기록뷰어에만 표시되던 [감정인 평정표 등록] 아이콘을 민사/가사신청, 기타사건, 항고/재항고, 강제집행, 기타집행, 가사, 행정, 특허, 과태료 사건의 전자소송기록뷰어에도 표시되도록 하여 접근성 강화
  - 감정서 등재 시 전자소송기록뷰어에 감정인평정대상사건임을 안내하는 공용부전지가 부착되도록 재판사무시스템 개선
- ▣ 법원행정처에서 ‘신체감정 등 개선 방안 연구’에 관하여 정책연구용역 진행
  - 신체감정 등 감정절차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신체감정 등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모색, 법원 신체감정의 감정료 산정 기준 및 적정성 평가 등이 연구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 3. 의료감정인 명단등재 절차 및 전국법원 의료 감정인 수 현황

- 매년 3. 31.까지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로부터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분야로 나누어 감정과목별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문의 추천받아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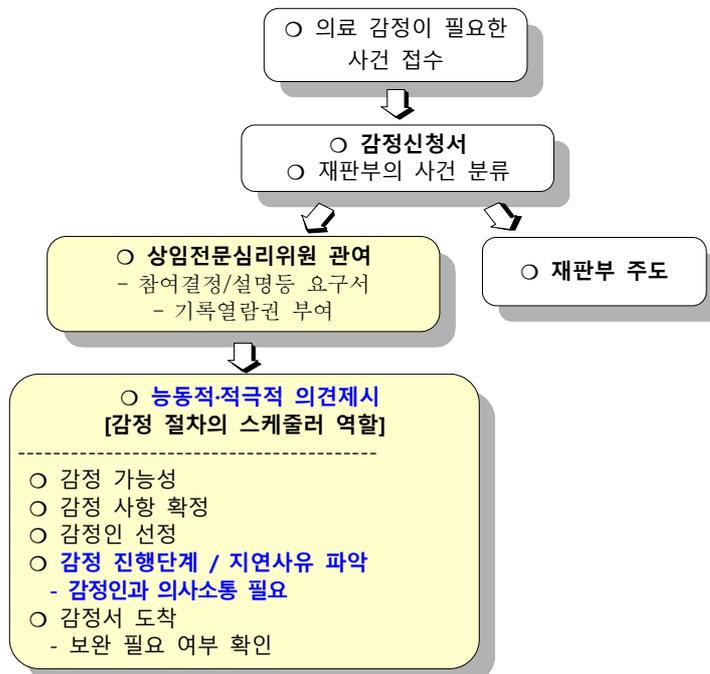
- 2022년도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 에 신체감정의 경우 총 68개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 전체 1,097명의 의사가,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총 63개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 전체 1,147명의 의사가 감정인으로 등재되어 있음

## 4. 논의 가능한 개선방안

### 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관여 확대(감정절차의 스케줄러로서 관여)

#### ▣ 필요성

- 의료감정 절차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조력 필요성
- 감정절차 지연, 반송 등의 원인으로 법원의 감정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 적절하지 못한 감정 사항, 해당 전공 분야 파악의 오류 등을 지적하기도 함
- 의료감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나 담당 법관,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대두





## ■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현재 의료 상임전문심리위원 현황

- 서울고등법원에 2명,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고등법원에 각 1명씩 총 7명
- 그 중 산부인과 전문의 1명, 내과 전문의 1명, 신경외과 전문의 3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 흉부외과 전문의 1명

## ■ 기존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역할과의 차이

	기존 사건 관여	스케줄러로서의 관여
재판부의 설명 등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사항에 대한 설명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인 선정 / 감정 사항 확정 / 감정서의 적정성 등 개별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li> <li>- 해당 재판부가 재판 진행 중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개별 설명요구서를 제시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 전체적 설명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배정 초기에 ‘감정인 선정, 감정 진행 단계 및 지연 사유 파악, 감정서의 적정성, 감정서 보완의 필요성 파악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포괄적인 설명요구서를 제시함</li> <li>- 즉 감정 절차와 관련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요구함</li> </ul> </li> </ul>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동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판부의 구체적 설명, 지시에 따른 의견제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동적·적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전문심리위원이 감정 진행단계에 따라 스스로 의견제시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의견제시</li> <li>- 예컨대 감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상임전문심리위원이 감정인과 연락하여, 감정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방안에 관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함</li> </ul> </li> </ul>



## ■ 도입가능성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설명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제시함. 감정사건 처리지연, 감정진행 단계도 의료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전문심리위원의 역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도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과 관련이 있다면 사전에 배제 가능
-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경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의료전담 재판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시범법원 및 시범재판부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를 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 문제점

- 상임전문심리위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감정 사항을 검토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증명 책임의 영역에 있는 부분에 관하여 재판부에 설명·의견을 제시하거나,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감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 변론주의 위배 여지가 있음
- 상임전문심리위원이 보완사항 등을 발견하거나 변론주의 위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조언이나 지시를 하기보다는 재판부와 상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나. 컨퍼런스 감정 도입

### ■ 필요성

- 의료감정의 경우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감정결과가 승패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충실한 감정도 중요함
- 감정의사별로 감정서 기재내용의 충실도에 편차가 존재하고, 감정결과에 구



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등의 답변만 기재되는 경우가 있음

#### ■ 일본 도쿄지방법재판소의 컨퍼런스 감정

##### ● 의의

- 3인의 감정인에 의하여 실시되는 컨퍼런스 방식에 의한 감정. 2003년 1월에 처음 도입
- 각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기일에 구두로 감정의견을 진술,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현재까지는 도쿄지방법재판소 이외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음

##### ● 특징

- 복수의 감정인이 동석하여 구두로 의견 진술, 필요에 따라 감정인간에 논의를 하게 되면서 각 감정인 사이의 의견 차이 및 이유가 선명하게 되어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됨
- 감정이 공개적인 법정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절차의 투명성, 복수의 전문의에 의한 감정결과의 형성과정이 밝혀짐에 따라 감정결과의 공평성, 객관성이 확보됨

#### ■ 도입가능성

- 감정절차에서 스케줄러로서의 상임전문심리위원 역할 확대방안과 연계하여,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이거나 사안이 복잡한 사건 등 특정사건에서 관련 감정인을 2명 이상 선임하여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중심이 된 컨퍼런스 감정 도입 가능

#### ■ 문제점

- 감정료가 저렴하고 감정을 부수적인 업무로 여기는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에서 복수의 감정의가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감정 대상에 대한 토론과 의견



을 교환할 수 있는 여건 부족

- 감정인이 복수로 선정됨에 따른 감정료 상승과 이로 인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증가

## 다. 감정촉탁기관 확대

### ■ 현재 감정촉탁기관

- 종합병원 이상의 감정인 추천을 통해 매년 3. 31.까지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 작성
- 각급 법원 재판부는 위 명단을 활용하여 감정과목을 지정해 소속병원에 촉탁 방식으로 감정 의뢰
- 위 명단 외에 진료기록 감정에 대하여는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에,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촉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 관련 의료단체 현황

-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
  - 공공기관에서 각 학회로 촉탁하는 경우가 많아 고유업무인 학술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개별 학회의 운영 고충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구인 의료감정원이 2019. 9. 설립됨
  - 절차: 의료감정 접수(사무처) → 감정심의 대상범위 해당여부 검토 및 감정 의뢰(의료감정심의위원회) → 감정료 산정 통보 → 해당 전문위원회 감정의뢰(전문위원회는 각 학회 내에 위치하며 감정위원 선정, 감정 의견 취합 및 평가, 감정 심의 결과 보고 등 감정 실무 담당, 전문성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감정의뢰 가능) → 감정 → 감정결과 회신
  - 학회로 직접 촉탁 시 감정과목이 부적절한 학회로 촉탁되거나 불충분한 감정 자료만으로 촉탁되는 사안이 방지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의뢰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수탁감정 실시
- 수탁감정 외에 의료분쟁 조정도 실시

#### ■ 감정촉탁기관을 학회로 하는 방안

- 신체감정(특히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수요가 많음)을 위해서는 일정 의료시설의 이용이 필요한데, 각 학회로 촉탁 시 신체감정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감정의가 현업에 종사하는 병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 대한의사협회는 신체감정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 밝힘
- 대한의사협회와는 달리 각 개별 학회는 검증되지 않은 이익집단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각 학회원들의 실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

#### ■ 퇴직교수 등의 활용

- 의료감정 인력 풀에 대학병원 등에서 퇴직한 교수들을 포함시키는 방안
- 일정 의료시설 이용이 필요한 신체감정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의료법 제39조 제1항7)의 시설 등의 공동이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필요
- 퇴직교수의 경우 경험은 풍부하나 최신의학 변화에 뒤떨어지는 문제점. 그러나 의료감정이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의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퇴직교수가 감정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단, 70세까지 등으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라. 감정료 증액

7)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 ■ 2008년 감정예규 제정

- 신체감정료 과목당 20만 원, 진료기록감정료 과목당 30만 원

#### ■ 2017년 감정예규 개정

-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료 기준을 정한 지 9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감정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
- 2017. 4. 12. 감정예규 개정하여 2017. 5. 1.부터 신체감정료 과목당 40만 원, 진료기록감정료 과목당 60만 원으로 100% 인상함

#### ■ 여전히 다른 감정인의 감정료에 비하여 감정료가 저렴, 이로 인해 병원에서 감정촉탁기관 신청에 소극적임

#### ■ 외국의 경우

- 미국: 전문가 증인으로서 보수는 사전검토 및 예비적 평가에 시간당 400~500 달러,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500달러 추가
- 독일: 시간당 25유로에서 52유로 사이, 시간당 보수는 감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수준, 추후하게 될 감정의 난이도 등에 근거하여 책정됨
- 일본: 일반적으로 서면감정 60만 엔, 복수감정·컨퍼런스 감정은 1인당 20만 엔으로 3인 합계 60만 엔

#### ■ 문제점

-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료 100% 증액한지 5년 경과
-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이 지연되거나 반송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의 감정 행위가 진료업무에 밀려나는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임에 비추어 보면, 감정료를 인상하는 방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증액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 기타



#### ■ 감정촉탁 현황 등 집계 필요

- 각 법원에서는 특정 감정촉탁병원의 특정 감정인에게 몇 건이 촉탁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정촉탁을 하게 됨
- 개별 감정촉탁병원의 진료과목별로 신체감정촉탁 건수, 진료기록 감정촉탁 건수, 반송 횟수, 회신기간 등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감정촉탁이 집중되는 병원이나 감정인이 있으면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정서 회신 지연이나 반송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감정인들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및 각 법원에서 관내 병원들의 감정인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세미나 개최

- 주요 진료과목별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감정인을 상대로 감정인 업무 지원 동기, 감정료 걱정 여부, 감정서 작성 업무 부담 정도, 보완감정 실태, 기타 애로 사항,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사들이 의료 감정을 기피하고 감정촉탁을 반송하거나 지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
- 각 법원에서 관내 병원들의 감정인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내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감정반송을 최소화하고, 감정회신 기간을 적절한 범위 내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

#### ■ 감정회신일 구체적 명시

- 감정촉탁 시 감정인과 사전에 상의하여 회신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안
- 회신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관례적으로 다른 일에 미루어지는 경향. 회신일을 구체적으로 지정 시 회신일이 촉박한 감정부더 순서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감정서 제출기한을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설정, 감정인이 최초 감정서 제출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 감정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감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정료를 감액(감정예



규 제27조8))

#### ▣ 표준 감정신청서의 양식 마련

- 신체감정신청서, 진료기록감정신청서 양식의 정형화 필요(과목별로 세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준 감정신청서 양식을 마련하여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전담부 등에서는 신체감정의 경우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5.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 ▣ 법원행정처에서 '신체감정 등 개선 방안 연구'에 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다음 분과위원회에서 의료감정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

-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 다음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11명 중 4명 찬성
-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의료감정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11명 중 7명 찬성
-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의료감정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찬성위원 없음

#### ▣ 의료 상임전문심리위원이 감정절차의 스케줄러로서 관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찬성: 11명 중 9명

8) 감정예규 제27조(재판장의 재량)

재판장은 지정한 회신기간이 경과하거나 감정인 신문기일 또는 감정촉탁서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감정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분의 2 이내에서 감정료를 감액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료를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



- 반대: 11명 중 2명

#### ▣ 컨퍼런스 감정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 찬성: 11명 중 4명
- 반대: 11명 중 4명
- 기타의견: 11명 중 3명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취지는 좋으나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시범실시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수요가 실제로 존재할지 의문임. 수요가 존재한다면 도입가능하나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료 증액에 대한 의견

- 찬성: 11명 중 7명
- 반대: 11명 중 4명 (2017년 감정예규 개정으로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 100% 인상, 5년이 경과하였지만 감정회신지연은 감정료의 문제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료 증액에 찬성할 경우 감정료를 어느 정도 증액하는 것이 적정할지(주관식 질문)

- 현재보다 30% ~ 50%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 20% 이상 증액 필요,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시간당 비용을 책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
- 신체감정료 과목당 50만 원으로 증액, 진료기록감정료는 현재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 전문의의 진료시간과 노력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 ▣ 감정촉탁 시 감정회신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회신을 요청하는 방안에



## 대한 의견

- 찬성: 11명 전원 (찬성하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음)
- 반대: 없음

### ▣ 기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퇴직교수들을 의료감정 풀에 포함하는 방안 고려해 볼 만함. 일정한 직위를 수여하는 등으로 일정한 예우를 갖추면 감정에 참여할 동기가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감정촉탁 현황을 집계하는 것은 법관의 사건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감정의 퀄리티 자체를 높이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감정인 상대 설문조사,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은 찬성. 상호 의견을 교류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VI. 현장검증 개선방안

### 1. 검토 배경

- 현장검증 시 지급되는 검증여비의 액수가 법관 및 직원의 검증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에 비하여 적고, 현장검증을 다녀올 경우 주간 근무시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현장검증을 기피하게 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왔음
- 이러한 이유로 현장검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의견 대두

### 2. 현장검증여비 현실화 방안

#### 가. 관련 규정

##### ▣ 민사소송비용법



#### 제5조(법관등의 일당·여비)

- ①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기타 비용)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 ■ 민사소송비용규칙

#### 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 ①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 교통비에 같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sup>9)</sup>

###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9) 1983. 4. 6. 대법원규칙 제정 당시부터 일당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음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sup>10)</sup>

[표5. 근무지 내 출장여비 등 지급 기준]

출장인원 1인 기준

전국 법원 공통

구분\출장 소요시간	4시간 이상 소요	4시간 미만 소요	
대중교통이용 (자가용 포함)	2만원 지급	1만원 지급	
공용·전용차 이용	1만원 지급	여비지급 없음	거리에 따른 6km당 11 연료대 별도 처리
전용차 배정자	여비지급 없음	여비지급 없음	“
기타경비	해당 법원에서 현장검증을 위한 출장의 경우 사건당 1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의 예납금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정액을 지급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이 예납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추가납부 절차 또는 국고대납절차를 거친 후 [별지3] 여비 등 정산 신청서상에 그 사유 및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표6. 근무지 외 출장여비 등 지급 기준]

출장인원 1인 기준

전국 법원 공통

10) 위 업무처리지침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라 실제 지급할 여비 액수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원칙	여비규칙【별표 2】에 따른 운임·일비·숙박비·식비·기타경비의 각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액으로 지급	
항목	구분	지급기준
운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등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포함)	【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표】에서 정하는 운임 지급
	공용·전용차량 이용	운임 지급 없음. 다만, 도로·공항·항만·주차장 이용료 등의 실비액은 운임으로 지급(연료대 6km 당 11 계산·처리는 별도)
일비	원칙	1일당 정액일비 2만원 지급
	공용·전용차량 이용	위 금액의 2분의 1, 즉 1일당 1만원 지급
식비	원칙	1일당 정액식비 2만5천원 지급
숙박비	원칙	예납금 산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액 지급
기타경비	원칙	현장검증을 위한 출장 사건 당 1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의 경비를 예납금으로 산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액을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비목별로 [별지3] 여비 등 정산 신청서에 그 사유 및 내역을 밝혀서 청구하는 경우(기타경비의 현장검증 외의 증거조사 목적인 경우 포함) 위 정액을 초과한 실비액에 대한 지급 가능

## ▣ 요약

- 근무지 내 국내출장(같은 시,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 또는 출장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 출장여행 시간 4시간 이상 → 총 20,000원 → 관용차 이용시 총 10,000원(관용차 이용시 10,000원 공제)
  - 출장여행 시간 4시간 미만 → 총 10,000원 → 관용차 이용시 총 0원(관용차 이용시 10,000원 공제)
- 근무지 외 국내출장
  -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로 계산
  - 일비는 1일당 20,000원, 관용차 이용시 1/2 감액
  - 식비는 1일당 25,000원(법관 이상 기준)

## 나. 외국의 경우



## 1) 일본

- 일본은 『민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여비를 직접 규정, 여비 및 숙박료만 증인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일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실비 보상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2) 독일

- 출장 여비 수준은 공무원과 법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됨

## 다. 현실화 방안 검토

### 1)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현장검증 관련 일당을 지급하는 방안

#### ▣ 가능성

-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에서는 법관,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은 실비액에 의하도록 하고, 그 실비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함
- 민사소송비용규칙을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비' 등의 명칭으로 일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 ▣ 문제점

- 근무시간 중 재판업무의 일환으로 현장검증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급여 이외에 보수의 개념에 해당하는 일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

### 2)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개정으로 일비, 식비 인상

#### ▣ 가능성

- 일비 10,000원 → 20,000원 인상: 2006. 2. 21. 개정



- 식비 1일 25,000원: 1998. 5. 19. 제정 이래 변동 없음
-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위 비용을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

#### ■ 문제점

- 일반 행정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은 거의 동일함
- 일반 행정공무원과 다르게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만 일비, 식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기 어려움. 개정하더라도 인상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3) 근무지 내 현장검증의 경우에도 식비 지급 방안

#### ■ 가능성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중 제18조에서는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여비규칙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액(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사실상 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 근무지 내 현장검증의 경우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8조를 따르지 않도록 하여 근무지 내·외 구분없이 여비를 지급하게 한다면, 별도로 일비 및 식비를 증액하지 않더라도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여비증액 효과

#### ■ 문제점

- 근무지 내 4시간 미만 출장의 경우 식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
-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을 적용함에도,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만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을 배제할 근거 부족함
- 현재도 실제 식비 지출하는 경우 추가 예납절차 거친 후 지급받을 수 있음

### 3. 원격 영상검증 도입 방안



## 가. 관련 법령의 경과

### ▣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 도입

- 증인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 진행 가능(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신설)
- 다만, 증인이 아동복지법위반 등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이거나,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신문 허용

### ▣ 2016. 3. 29.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증인·감정인에 대한 영상신문 도입

- 증인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신설)
- 감정인, 감정증인 등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제340조 단서 및 제341조 제3항 신설)

### ▣ 2020. 6. 1.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영상재판 도입

- 재판장등이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6항 신설)

### ▣ 2021. 8. 17.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재판의 범위 대폭 확대

구분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방식
민사	변론기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	인터넷 화상장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변론준비기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b>, 심문기일</b>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1항)			
	<b>증인신문</b>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b>당사자신문</b> (민사소송법 제373조에서 제327조의2 준용)	증인 등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 등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	
	<b>감정인신문</b> (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때		
형사	<b>공판준비기일</b>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	인터넷 화상장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b>구속 이유 고지</b> (형사소송법 제72조의2)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b>증인신문</b>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b>감정인신문</b> (형사소송법 제177조에서 증인에 관한 규정 준용)	증인 등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 나. 원격 영상검증의 도입 필요성 여부

- 현장검증의 특성상 원격 영상검증을 도입할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이 주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임
- 원격 영상검증을 도입할 경우 현장에 직접 법관 등이 나가지 않아도 되므로 검증이 활성화되고, 재판부가 궁금한 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에도 현장검증을 대신하여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현장을 촬영한 고화질의 동영상 등을 제출하고 있고, 법정에서 동영상 시청, 인터넷 상에서의 위성지도, 거리지도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
- 또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원격 영상검증을 도입할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신분 확인, 주위의 부당한 영향력 배제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다. 원격 영상검증 도입 시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 현 민사소송법은 원격 영상검증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검증의 실시 장소,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또한 두고 있지 않음<sup>11)</sup>
-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중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에 '현장검증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활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현장검증을 활용하고 있음
- 다만, 회생사건의 경우 '증거'로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채무자 회사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현장검증이므로, 민사소송에서의 현장검증과는 차이가 있음

### 4.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 ▣ 현장검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에 대한 의견(복수선택 가능)

- 현장검증시 지급되는 검증여비 액수가 검증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에 비하여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 11명 중 4명
- 현장검증을 다녀올 경우 주간 근무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 11명 전원 선택

11) 민사소송법 제364조(검증의 신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최근 인터넷 등 발달로 직접 현장에 갈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 11명 중 8명

▣ **현장검증을 대체할 수 있는 고화질 동영상, 사진자료 등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현장검증 신청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검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11명 중 1명
-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현장검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되, 현장검증 여비 현실화, 원격 영상검증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11명 중 6명
-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현장검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검증 여비 현실화, 원격 영상검증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11명 중 4명

▣ **현장검증여비 증액에 대한 의견**

- 찬성: 11명 중 6명
- 반대: 11명 중 4명
- 기타 의견: 11명 중 1명 (현장검증은 현장에 가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진촬영, 조서정리 등 추가 업무를 발생시키고, 그 자체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근무시간을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장조사비' 등 명칭으로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에 찬성함. 다만, 비용증액 방안은 사전에 변호사단체 등의 공감을 얻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2008년도에 현장검증여비 등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는데, 이를 다시 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의견<sup>12)</sup>)

12) 2008년 이전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을 따르지 않고, 법원별 또는 재판부별로 과거부터 내려오는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검증여비를 산정하였음. 이에 따라 법원마다 검증여비 산정기준이 다르고 동일 법원 내에서도 재판부별 차이가 발생함.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2008. 2.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을 제정·시행하면서 파생한 결과로 현장검증여비가 실질적으로 감액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 현장검증여비 증액에 찬성할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안(복수선택 가능)

- 민사소송비용규칙을 개정하여 법원 및 법원공무원에게 현장검증 관련 일당을 지급하는 방안: 11명 중 5명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을 개정하여 일비, 실비 등을 인상하는 방안: 11명 중 2명
- 근무지 내 현장검증의 경우에도 식비를 지급하는 방안(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적용 배제): 11명 중 1명
- 기타 의견: 11명 중 1명 (증액을 한다면 민사소송비용규칙을 개정하여 현장조사비 등의 명칭으로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에 찬성함. 다만, 현장검증이 법관이나 법원 직원에게 추가업무로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 원격 영상검증 도입에 대한 의견

- 찬성: 11명 중 6명
- 반대: 11명 중 5명

#### ▣ 그 밖의 현장검증 활성화에 대한 의견

- 현장검증 신청건수 대비 실시건수 통계를 재판부별로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 현장검증에 갈음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을 제출하거나 위성지도 등으로 갈음할 경우 ① 법원이 사전에 동영상, 사진 또는 위성지도 등의 촬영 및 제출 방법에 대한 권고안(예시)을 제시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제공, ②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당해 동영상, 사진 또는 위성지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이 현장검증에 준하여 이러한 자료를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 Ⅶ.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기타 감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 1. 영상재판에 의한 감정인신문 활성화 방안

- 감정인신문은 ① 감정인에게 최초로 출석을 요구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후 감정사항을 알리고 감정을 명하는 것과 ② 감정인이 감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 후 법원에 대하여 보충진술을 하는 것의 두 가지 의미가 있음
- 민사소송법 제339조의3에 의해 영상재판으로 감정인신문이 가능해짐. 영상재판을 이용하면 감정인신문이 활성화될 수 있고, 종전에 선서를 위한 감정인신문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촉탁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감정분야도 감정인신문을 통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보충진술 의미의 감정인신문도 활성화된다면 감정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공방과 쟁점정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2. 지연감정에 대한 개선방안

- 감정예규 제27조의 감정료 감액 규정을 홍보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 재판부와 소송당사자 및 감정인이 사전에 상의하여 정한 회신일보다 감정서가 지연되어 도착할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료를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지연감정에 대한 제재를 실질화하고 지연감정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3. 감정인 평정 활성화 방안

- 감정인 평정이 활성화될 경우 감정인 명단 재등재를 원하는 기존 감정인들에 대한 실질적 자격심사를 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고, 평정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감정인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음
- 감정예규 제46조에서 “감정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감정이 종료된 시점에 재판장(경매사건에서의 시가등의 감정의 경우에는 담당 사법보좌관)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



체감정등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감정인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감정인평정표를 작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체감정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감정인 평정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재 감정서 도착 시 전자소송기록뷰어에 감정인 평정 대상 사건임을 안내하는 공용부전지가 부착되도록 재판사무시스템을 개선하였으나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감정서 도착 시 실무관으로 하여금 재판장 등에게 감정인 평정표에 대한 결재를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
- 시범재판부를 지정(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부)하여 감정실시 후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감정인 및 감정결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이를 감정인 평정표에 반영하는 방안

#### 4. 감정인 평정표 개선방안

- 현재 감정인 평정표의 평정요소는 ‘감정내용의 충실도’, ‘감정인의 중립성’, ‘감정기간’, ‘감정료’ 각 3점으로 되어 있고 ‘우수(3점)’, ‘평균(2점)’, ‘평균 이하(1점)’ 중 하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평정요소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재판장 등이 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각 평정요소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감정인 평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하면, 세부기준 준수 여부를 각 평정요소의 판단 자료로 활용하여 감정인 평정표 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객관적인 평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임

- 최종 '의견란'에 적합/부적합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감정인 평정표를 개선하면, 감정인 명단 재등재를 위한 심사 시 부적법한 감정인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음